관세무역연구
제1권 제1호 2024. 3.
pp. 51~86.

논문투고일 2024. 02. 14.
심사완료일 2024. 03. 05.
게재확정일 2024. 03. 27.

디지털 전환 시대 디지털 무역의 통관체제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한낙현*

목 차

Ⅰ. 서 론
Ⅱ. 디지털 전환의 개요와 통관제도의 선행연구 분석
Ⅲ. 무역원활화와 디지털 통관시스템 전환
Ⅳ. 디지털 무역 통관체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COVID-19로 인해 세계경제는 디지털 전환이라는 격변의 시기를 겪고 있다. 특히, 새로운 디지털 신기술이 출현하면서 무역의 양상마저 변화하고 있는데, 상품과 서비스 교역 위주의 무역환경이 인터넷을 통해 공급될 수 있는 디지털화된 제품과 서비스, 데이터의 국경간 거래로 확대되고 있다. COVID-19 이후 디지털 무역이 활성화되면서 다품종 소량 방식의 전자상거래 건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이러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무역에 있어 통관제도를 악용한 밀수, 관세포탈, 위해물품 부정수입 등의 위법적 통관행위도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무역 통관에 있어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을 고찰한 후 국내 디지털 무역 통관체제의 개선방안을 고찰하고 있다.

| **주제어** 디지털 전환, 무역 원활화, 디지털 무역, 통관제도

* 경남대학교 무역물류학과 명예교수, E-Mail: nhhan@kyungnam.ac.kr

Ⅰ. 서 론

글로벌 통상의 시장 자유화와 공급망 세계화 패러다임이 쇠퇴하는 가운데 4차 산업혁명으로 세계가 인터넷으로 연결된 디지털 세계화(digital globalization) 시대가 새롭게 열리고 있다(김호철, 2023). 인터넷으로 비대면 회의를 진행하고 모바일 앱으로 음식을 주문하는 것이 익숙해졌고, 기업들도 고객의 관심과 수요를 빅데이터로 분석하여 맞춤형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김호철, 2023). 제조 현장에서는 반복적이고 힘든 작업을 로봇이 대신하고 블록체인,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 IoT),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 AI), 클라우드 등 기술로 시스템을 혁신하는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 DX)이 주목받고 있다.

DX는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의 등장을 촉진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생산성 향상 및 경제성장에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DX는 디지털 무역(Digital Trade)의 확대를 촉진시켜 디지털을 통한 상품과 서비스의 수출 기회도 확대시킬 것이다. 반면, 디지털 기술에 대한 높은 의존도로 사이버 보완에 대한 위험성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업무의 자동화 및 디지털화로 인해 고용에는 부정적 영향이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도 대두되고 있다.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 WEF)은 국가 간 무역을 효율적이고 포용적이며 공정하게 만드는 디지털 기술혁신을 'TradeTech'라고 명명하고,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 WTO)와 함께 이를 확산하기 위한 협상 과제를 정리하여 제시하고 있다(WEF, 2020 ; WTO and WEF, 2022). 또한 WTO 등은 무역거래 디지털 전환(DX in trade)을 협상목표로 설정하고 더욱이 협상 패키지와 참가국을 재구성하는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김호철, 2023).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협상 패키지에 포함될 수 있는 사항으로, 첫째, 전자거래 문서에 대한 법적 인정(legal recognition)이다. 무역협정에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U.N.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 UNCITRAL) 전자상거래 모델법 등 국제적 지침을 명시하여 전자서명, 전자송장, 전자계약 등에 대한 각국 제도를 조화시켜야 한다. 둘째, 국경을 이동하는 사람과 물품에 대한 디지털 신원(digital identity)이다. 기업이나 정부가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디지털 신원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국제적 시스템이 필요하다.

무역협정을 통해 UNCITRAL과 연계하여 최소한의 디지털 신원 정보를 공유하는 글로벌 협력을 확대할 수 있다. 셋째, 무역거래 문서와 통관 플랫폼의 상호운용(global interoperability) 확보이다. 무역협정을 통해 유엔무역원활화와 전자상거래 센터(United Nations Centre for Trade Facilitation and Electronic Business, Centre des Nations Unies pour la facilitation du commerce et les transactions électroniques : UN/CEFACT) 및 세계관세기구(World Customs Organization : WCO)가 개발한 데이터 의미사전 보급과 공통 문서표준 개발, 각국의 통관단일창구(national single window) 상호운용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넷째, 무역거래에 적용되는 정책과 규범의 디지털화이다. 무역협정을 활용하여 복잡하게 얽혀있는 정책과 규칙들을 컴퓨터가 자동 인식 가능하도록 디지털화하면 무역이 훨씬 원활해질 것이다.[1)]

또한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의 급속한 확산 등 급변하는 무역환경에 발맞추어 디지털 무역 물품통관혁신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디지털 무역 수출기업 '무역금융 신청용' 수출신고 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면제함은 물론 전용시스템을 통한 환급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여 디지털 무역거래 수출편의 제고로 우리나라 디지털 무역 물품의 수출경쟁력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입항일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과세되었던 합산과세 기준을 개선하고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방지를 위한 자동검증 서비스 시행 등 해외직구를 이용하는 선량한 국민의 소비는 보호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해외직구를 악용하는 시도는 철저하게 차단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이종욱, 2023). 아울러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위해물품으로부터 국민안전 보호를 위해서도 노력해야 할 것이다. 마약·총기류 등 위해물품 반입 차단 및 테러 대응 역량 강화, 식약처 등 관련부처와 적발정보 공유·협업검사 확대를 통해 생활밀접물품 및 위해성분 함유 식품 등에 대한 집중단속 실시로 국민생활 안전 침해물품의 반입차단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

1) WTO and WEF의 5가지 제안(① Global data transmission and liability frameworks, ② Global legal recognition of electronic transactions and documents, ③ Global digital identity of persons and objects, ④ Global interoperability of data models for trade, documents and platforms, ⑤ Global trade rules access and computational law) 중 글로벌 데이터 전송(global data transmission)의 경우 각 국간 데이터 규제조화, 사이버보안 국제표준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무역거래 절차와는 내용이 다소 상이하고 데이터 신뢰는 별도로 다루어져야 하므로 제외하였다(WTO and WEF, 2022).

본 연구에서는 Ⅰ. 서론에 이어, Ⅱ.에서는 디지털 전환의 의의와 디지털 무역의 의의를 고찰하고 또한 통관제도의 선행연구를 분석하고 있다. Ⅲ.은 무역원활화에 따른 디지털통관시스템으로의 전환에 대해 설명하고, Ⅳ.는 우리나라의 디지털통관시스템으로의 전환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Ⅴ.는 본 연구를 정리·요약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전환 시대 디지털 무역의 원활화에 따른 통관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점에서 선행연구와는 차이점이 있으며, 본 연구의 결과는 이와 관련된 주제를 연구함에 있어 하나의 기초자료로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Ⅱ. 디지털 전환의 개요와 통관제도의 선행연구 분석

1. 디지털 전환의 개요

1) DX의 의의

DX의 정의에 대한 무수한 학문적, 비즈니스적인 해석 자료들이 존재하고 있고, 수행 방법 또한 다양한 해석을 통해서 방법론이 소개 및 제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무수한 정의를 요약해 보면, DX은 '디지털 관련 모든 것(All things about Digital)으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변화를 동인으로 기업의 비즈니스모델, 전략, 프로세스, 시스템, 조직, 문화 등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디지털 기반 경영전략 및 경영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김헌, 2022). 그러면 DX의 출현 및 변화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길 것이다. 우리 생활에 인터넷 통신이 등장하면서 DX는 시기와 목적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변화 발전하고 있다(박성순·조광섭, 2021). 1단계(Phase 1)는 2000년대 초반까지 '정보의 디지트화(Digitization)'를 목적으로 컴퓨터 시스템(대용량, 네트워크, 개인 PC 등)에 아날로그 정보를 디지털 정보로 전환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2단계(Phase 2)는 2010년대 초반까지 운영 혁신 및 효율화를 목적으로 '업무 프로세스, 주문·생산 방식의 디지털화(Digitalization)'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끝으로, 3단계(Phase 3)는 2010년대 초반 이후, 디지털화된 인프라·시스템에 대한 새로운 기술의 적용(클라우드, AI·데이터분석 등)과 고객의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접속 환경의 다변화, 인터넷상의 대중 커뮤니케이션 그룹의 다변화

(예: 모바일 디바이스 대중화, SNS 환경 등)에 따른 비즈니스 혁신의 시기인 “DX”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표 1〉 디지트화, 디지털화, DX의 비교표

Phase	Phase1	Phase2	Phase3
구분	Digitization	Digitalization	DX
시기	-2000년(PC중심)	-2010(웹/인터넷 중심)	-2011년(모바일/클라우드 중심, 2015년부터 DX용어 본격사용)
목적	정보의 디지털화(데이터화/정보화)	IT기술을 활용한 프로세스 중심의 운용혁신(업무 효율화, 비용절감)	디지털기술 중심의 비즈니스혁신 (매출 증대, 신규 고객/매출확보)
Enabler	개인pc/대용량컴퓨터시스템/pc통신	정보기술(IT)	디지털 기술
변화내용	정보의 유형 (아날로그→디지털 정보로 전환)	업무처리방식(업무 프로세스의 IT화, 주문/생산방식의 디지털화)	비즈니스모델(제품의 서비스화, 제품+서비스결합, 신규 서비스)
예시	-PC+O/A SW(한글, MS오피스 등) PC통신+메일 -서버(유닉스/메인프레임 등)	-Enterprise S/W(ERP/SCM 등) 기반 업무혁신, 공장자동화 등 -비용 효율화를 위한 인프라 전환: 고가 서버(유닉스/메인프레임)→ 저가서버(x86)	-언택트 비즈니스(온라인쇼핑, 화상교육 등) -AI기술 접목(AI 컨텍센터, 안면인식 등) -공유/중개 플랫폼(Uber, Airbnb, 배달의 민족 등) -가상화(가상화폐려제, 사이버 아바타 등)

자료 : Bloomberg, 2018.

이러한 디지털 단계의 구분을 통하여 볼 때, DX은 컴퓨터 네트워크 통신의 발달로 인하여 변화하고 있는 우리의 생활 방식(일하는 방식, 소통하는 방식, 휴식하는 방식, 구매 및 서비스 방식 등)에 대한 변천 과정의 특징을 설명하는 용어라 할 수 있겠다. 결국, 이러한 생활 방식의 변화는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전략, 프로세스, 시스템, 조직, 문화 등에도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 디지털 무역의 의의

DX가 가속화되면서 ‘디지털 무역’이 전세계 무역시장의 흐름을 바꾸고 있다. 디지털 기술의 등장과 급속한 발전은 무역 환경의 디지털화를 야기했고, 이는 새로운 교역재와 거래수단의 등장으로 이어졌다. 전통적인 무역보다 더욱더 다양한 주체가 국가 간 무역에 참여하게 되는 새로운 길도 열렸다. 이른바 디지털 무역의 시대가 열린 것이다.

디지털 무역은 아직 국제적으로 정립된 하나의 정의가 없다. 다만 ‘디지털 기술과 관련된 모든 국가 간의 교역 활동’을 포괄하는 광의의 의미로 국제적인 합의가 형성되고 있다. 디지털 무역은 전자상거래에서 출발했다. WTO가 1998년 전자상거래 (e-commerce)를 “전자적

수단에 의한 상품 및 서비스의 생산, 유통, 판매 또는 전달"(WTO, n.d.)로 정의하였는데 이는 상거래 방식의 전자화에 초점을 둔 협의의 개념이었다. 협의의 전자상거래에서 주체는 기업들이었다. 기업이 주축으로 소비자에게 물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B2C 거래와, 기업이 기업에 판매하는 B2B 거래가 전자상거래의 중심이었다고 할 수 있다(이효영·황세희, 2021).

하지만 디지털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국가 간 교역을 이루는 주체와 그 거래 대상의 범위가 확대되었고, 전자상거래를 포괄하는 광의의 개념인 디지털 무역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했다. 국가 간 교역의 주체는 기업을 넘어 정부와 소비자로 확장되며 새로운 무역시장을 열며 C2B, C2C, G2C, G2B 거래가 국가 간에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새로운 교역재도 등장했다. 소비자의 개인정보나 정부가 취합한 공공정보와 같은 데이터를 비롯해 원격 의료 서비스나 교육 컨텐츠와 같이, 전통적인 무역에서는 상상하지 못했던 서비스 상품들이 교역의 대상이 되었다(이한영, 2020).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디지털 무역을 "인터넷 상 소비재의 판매와 온라인 서비스의 공급뿐만 아니라,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 : GVC)를 가능하게 하는 데이터 이동, 스마트 제조를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 무수한 여타 플랫폼 및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으로 정의했다(USTR, 2017).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 OECD)·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 IMF)·WTO가 함께 발표한 '디지털 무역 측정 핸드북'에서 디지털 무역은 "디지털로 주문되거나 디지털로 배달되는 모든 무역"으로 정의되었다(OECD, WTO and IMF, 2020). 이처럼 디지털 무역은 기존의 전자상거래보다 상위의 개념으로, 디지털 인프라,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디지털 미디어, 그리고 이러한 거래에서 따라오는 데이터와 지적재산권의 이동까지 디지털 기술로 가능해진 다양한 무역활동을 모두 포괄하는 광의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개념의 확장은 무역 협정에서 쓰이는 용어의 변화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2006년 한·미 FTA와 2015년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서는 '전자상거래'가 장(chapter) 명으로 사용되었다. 하지만 2018년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에서 '디지털 무역'이 장(chapter) 명으로 쓰이면서 '디지털 무역'이 무역협정에서 자주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2019년 미국과 일본의 '미·일 디지털무역협정(U.S.-Japan Digital Trade Agreement : USJDTA)'에서도 '전자상거래'가 아닌 광의의 '디지털 무역'이 쓰였다. 2020년

싱가포르와 뉴질랜드, 칠레 사이에서 체결된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igital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 : DEPA)는 디지털 무역을 넘어 '디지털경제협력협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며 그 범위를 한층 더 확장하였다. 한국의 경우에도 최근 싱가포르와 디지털동반자협정(Digital Partnership Agreement : DPA)을 발효하였으며, 칠레, 싱가포르 등 다자국과 DEPA의 가입을 위한 협상을 개시하고 있다.

특히, 데이터경제 시대를 맞아 데이터 이동의 자유가 디지털무역의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으며, 최근 미국과 중국 간 기술패권 전쟁이 데이터 전쟁으로 확산되고 있을 정도로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은 주요국의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우리 정부는 디지털경제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글로벌 데이터 허브로 도약하기 위해 디지털뉴딜 등 DX 사업을 통해 데이터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있으나, 디지털무역제한지수(Digital Trade Restrictiveness Index : DTRI)[2]에 따르면, 한국은 조사대상 64개국 중 15번째로 디지털무역정책이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데이터분야는 64개국 중 8번째로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디지털 무역정책 개방도는 OECD 국가 중 4번째로 낮아 데이터 이동을 포함한 디지털 무역환경이 폐쇄적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이희흔, 2022).

2. 통관제도의 선행연구 분석

통관제도와 관련된 선행연구로서, 강효원(2016)은 2009년부터 2015년까지 6년간 우리나라 전자상거래물품의 수입통관정보를 분석하여, 그와 관련된 시사점을 도출하고 그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하고 있으며, 곽병곤·송희영(2009)은 전자상거래물품 통관과 관련 문제점을 검토하고 건전한 전자상거래 통관의 정착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곽은현(2020)은 해외 국가의 간이통관절차를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해외직구 통관절차상 문제점들과 개선방안에 대해 분석하고, 또한 선행연구를 통한 해외직접구매 현황파악과 이와 관련된 정부의 통관제도 분석을 통해 해외 국가 통관절차를 비교 분석하고 있으며, 김종권·유광현(2020)은 무역에서 블록체인 기술의 적용 가능성과 이러한 기술 적용에 따른 무역에의 기여하는 정도를 분석함으로써 블록체인 등을 중심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들의 무역

2) DTRI는 0부터 1까지의 값을 가지며 0에 가까울수록 디지털무역정책이 개방적이고 1에 가까울수록 폐쇄적임을 의미한다.

에의 적극적 활용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으며, 특히 수출입통관에 있어 블록체인 기술의 적용에 따른 효율성 제고의 가능성에 대한 논의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으며, 김종덕·김율성(2019)은 간이통관이 배제되는 해외직구물품에 대한 관세 등의 납세신고 방법 개선, 물품신고시 전자상거래에 적합하도록 신고항목 축소, 그리고 서류보관 의무 면제 등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김충호(2017)는 간이통관제도 중에서 이른바 '해외직구'라고 불리며 최근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특송물품 통관제도에 한정하여 분석·검토하고 있으며, 라공우(2022)는 ASEAN 주요국과 우리나라와의 무역관계를 살펴보고 비관세장벽으로 활용될 수 있는 제도와 표준 인증, 수입통관 관리 등의 내용을 고찰하고, 이에 대한 수출물품 인증과 통관절차에서 야기될 수 있는 유의점을 제시하고 있으며, 손승표(2021)는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핵심적인 기술 중 하나인, 블록체인 및 암호화 기술을 활용한 보안성과 정보의 투명성을 기반으로, 물류 경영 분야 중 가장 대표적인 운영관리의 효율화 방안에 대한 이론적 및 실무적 분석을 통하여, 향후 실시간 관세 통관 분야 플랫폼 기반 거래 검증 및 물류행정 정보 공유와 관련된 SCM 운영관리 절차가 대폭 간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송선욱(2020)은 블록체인 기술과 활용상의 효과, 국제물류 분야와 통관 분야에서의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 사례를 확인하고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관세행정 효율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안태건·김태환(2020)은 디지털 콘텐츠에 대해 수입의 형태와 방식에 따라 관세의 과세여부가 달라지는 등의 문제에 대해서 국내외 관세 통관과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고 관련된 법원판례와 조세심판사례 등을 고찰하고 있으며, 엄도영(2022)은 다양한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방식을 살펴보고, 이에 수반되는 통관 및 안전·인증 관련 쟁점을 분석하며, 특히 피해 사례, 불법 사례, 국내 식품 기준 등 안전기준 부적합 사례를 중심으로 통관, 국민의 건강과 안전 관련 이슈를 고찰하고 있으며, 이명구·이은재(2018)은 통관물류분야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한 외국의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관세행정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상진·윤영삼(2009)은 우리나라 전자통관시스템의 활용실태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전통적 EDI방식과 인터넷 EDI방식을 면밀하게 비교 분석한 후 우리나라 전자통관시스템의 서비스 제고전략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예림(2019)은 전자통관 서비스가 통관사용인인 관세사, 수출입업자 등에게 신뢰성과 만족도 그리고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특히, 수출입통관 시스템, 관세징수 시스템,

수출입화물관리 시스템, 관세환급시스템, 그리고 통관단일창구 시스템이 전자통관 신뢰성과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분석과 이들 요인이 사용인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으며, 이지수(2021)는 수출입 정보공유체계를 구축하는 연구의 중요성과 방향성을 확인하고, 통관단일창구에 관한 연구를 조직, 법적, 제도적 분야에서 다분화하여 정부 부처 간 정보공유를 연구하는 분석 틀을 고찰하고 있으며, 이은재·이지수(2020)은 4차 산업혁명 시대 무역원활화 제고를 위한 싱글윈도우 개선방안 및 시사점을 고찰하고 있으며, 조원길(2022a)은 무역구조의 전자상거래로의 전환에 따라 해외 주요관세당국이 주문·결제·물류정보를 세관시스템과 연동하는 종합통관체제로 진행 중인 추세에 맞추어 국내 전자상거래통관체제의 문제점 파악과 재해석을 통해 향후 체제개편에 요구되는 방안을 고찰하고 있으며, 조원길(2022b)는 인도태평양지역 거대경제권 체제인 IPEF에서 논의하고 있는 통관절차 간소화 등의 취지에 부합하고자 인도-태평양지역 내 우리 기업들이 겪고 있는 대표적인 비관세장벽 중 하나인 통관 애로사항 가운데 통관절차 해소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최장우(2006)는 국내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의 운영 실태를 살펴보고 B2C 전자상거래 물품에 대한 특별통관제도 도입의 필요성, 주요 내용, 도입효과 등에 관한 탐색적 분석을 통하여 국내 인터넷 전자상거래의 건전한 질서 확립과 글로벌 B2C 전자상거래 확산을 위한 몇 가지 발전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최장우(2009)는 전자상거래물품에 대한 효율적인 통관관리를 위하여 2005년 부터 도입하고 있는 특별통관제도의 운용상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관세행정의 선진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효율적인 통관관리방안을 모색하는데 필요한 정책적인 시사점과 대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최준호(2021)는 현재의 통관환경과 관세사제도의 현황을 파악하고 통관환경 변화에 대응한 관세사제도의 바람직한 운영방안을 위한 문제점을 파악한 후 법령 개정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최철호·송인방(2022)은 주요 전자통관시스템의 최근 현황과 각 시스템이 추구하는 전자통관시스템시장 수출전략을 알아보고, 이에 따른 UNI-PASS 수출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고 있으며, 홍미선(2015)은 통관업무 효율화를 위한 전자통관시스템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표 2〉 선행연구 정리

구분	연구자(년도)	연구 내용
전자상거래물품의 통관 분석	강효원(2016)	우리나라 전자상거래물품의 수입통관정보 분석(문헌분석)
	곽병곤·송희영(2009)	전자상거래물품 통관과 관련 문제점을 검토하고 건전한 전자상거래 통관의 정착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문헌분석)
	라공우(2022)	수출물품 인증과 통관절차에서 야기될 수 있는 유의점 분석(문헌분석)
	안태건·김태환(2020)	국내외 관세 통관과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고 관련된 법원판례와 조세심판사례 등을 고찰(문헌분석)
	엄도영(2022)	통관 및 안전·인증 관련 쟁점을 분석하며, 특히 피해 사례, 불법 사례, 국내 식품 기준 등 안전기준 부적합 사례를 중심으로 통관, 국민의 건강과 안전 관련 이슈를 고찰(문헌분석)
	이상진·윤영삼(2009)	우리나라 전자통관시스템의 서비스 제고전략을 제시(문헌분석, 실증분석)
	이예림(2019)	전자통관 서비스가 통관사용인인 관세사, 수출입업자 등에게 신뢰성과 만족도 그리고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의 분석(문헌분석, 실증분석)
	이지수(2021)	통관단일창구에 관한 연구를 조직, 법적, 제도적 분야에서 다분화하여 정부 부처 간 정보공유를 연구하는 분석 틀의 고찰(문헌분석, 실증분석)
	조원길(2022a)	국내 전자상거래통관체제의 문제점 파악과 재해석을 통해 향후 체제개편에 요구되는 방안의 고찰(문헌분석)
	조원길(2022b)	우리 기업들이 겪고 있는 대표적인 비관세장벽 중 하나인 통관 애로사항 가운데 통관절차 해소 방안의 제시(문헌분석)
	최장우(2006)	국내 인터넷 전자상거래의 건전한 질서 확립과 글로벌 B2C 전자상거래 확산을 위한 발전방안의 제시(문헌분석)
	최장우(2009)	특별통관제도의 운용상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관세행정의 선진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효율적인 통관관리방안의 모색(문헌분석)
	최준호(2021)	통관환경 변화에 대응한 관세사제도의 바람직한 운영방안을 위한 문제점을 파악한 후 법령 개정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대안의 제시(문헌분석)
	최철호·송인방(2022)	전자통관시스템의 최근 현황과 각 시스템이 추구하는 전자통관시스템시장 수출전략을 알아보고, 이에 따른 UNI-PASS 수출활성화 방안의 도출(문헌분석)
	홍미선(2015)	통관업무 효율화를 위한 전자통관시스템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문헌분석, 실증분석)
해외직구 물품의 통관 분석	곽은현(2020)	우리나라의 해외직구 통관절차상 문제점들과 개선방안에 대한 분석(문헌분석)
	김종덕·김율성(2019)	해외직구물품에 대한 관세와 서류보관 의무 면제 등의 방안을 제시(문헌분석)
	김충호(2017)	특송물품의 통관제도에 대한 분석·검토(문헌분석)
4차 산업혁명(블록체인) 기술의 적용 분석	김종권·유광현(2020)	수출입통관에 있어 블록체인 기술의 적용에 따른 효율성 제고 가능성에 대한 분석(문헌분석, 실증분석)
	손승표(2021)	실시간 관세 통관 분야 플랫폼 기반 거래 검증 및 물류행정 정보 공유와 관련된 SCM 운영관리 절차가 대폭 간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문헌분석)
	송선욱(2020)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관세행정 효율화 방안 제시(문헌분석)
	이명구·이은재(2018)	우리나라 관세행정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방법론을 제시(문헌분석)
	이은재·이지수(2020)	4차 산업혁명 시대 무역원활화 제고를 위한 싱글윈도우 개선방안 및 시사점을 고찰(문헌분석, 실증분석)

자료 : 저자 작성.

선행연구의 분석형태를 보면 전자상거래물품의 통관시스템의 활성화에 관한 제도적·법적 고찰을 하고 있으며, 또한 해외직구물품의 통관시스템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또한 수출입통관에 있어 불록체인 기술의 활용과 그에 따른 효율성 방안과 시사점 등을

고찰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무역의 원활화에 따른 우리나라의 디지털통관시스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점에서 선행연구와는 차이점이 있다.

Ⅲ. 무역원활화와 디지털 통관시스템 전환

1. 디지털 통관시스템의 서비스 시장 발전

싱가포르와 미국 당국은 통관 분야의 DX를 가장 먼저 추진했다. 그들이 구현한 시스템, 프로세스 및 절차는 상당히 다양하지만 목표는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디지털 솔루션을 도입하여 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이고 고객 지향적으로 만드는 것이다(Krotki and Störbrock, 2020). 동시에 디지털화는 전체 물류망을 따라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다. 운송관리시스템은 점점 더 강력해지고 사용자 친화적으로 변하고 있으며 점점 더 많은 프로세스가 온라인으로 제공되고 있다. 기업이 일상 업무에서 디지털화 경험을 쌓을수록 통관 서비스 제공업체와의 상호 작용 개선을 더욱 요구하게 될 것이다.

〈그림 1〉 당사자간의 상호작용

자료 : Krotki and Störbrock, 2020.

무역원활화(Trade Facilitation)은 국경간 상품이동을 촉진하는 투명하고, 예측가능하고, 신속한 통관절차를 의미한다. 무역원활화 조치의 실행은 무역으로 인한 이익분배, 기업, 소비자, 관행 선진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무역원활화는 무역에 드는 비용을 줄이는 데 필수적 조치로 이를 통해 모두를 위한 무역에 기여하고 있다. 무역비용에 더 큰 비용을 드는 중소기업에게 무역에 참여할 유인을 주고, 보다 많은 이익을 부여하고 있다(김민성, 2018).

GVC 참여가 중요한 점을 고려할 때, 비효율적인 통관절차로 인한 비용은 크게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효율적인 국경 절차는 재고관리 비용을 낮추고, 특히 부패하기 쉬운 농산물, 첨단 제조업 부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며, 또한, 근래의 국제 소포무역의 증가라는 도전요인을 극복하는 핵심수단이 될 수 있다. 한편, 무역원활화는 기업이 소비자 선호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해주고, 시간 민감형(time-sensitive) GVC 참여에 도움을 준다. 빠른 상품의 수송과 함께 소비자는 빠른 배송에 대한 비용의사가 높아지므로 소비도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국제무역의 흐름을 원활히 하고, 관세 당국이 관세수입을 쉽게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김민성, 2018).

WTO·무역원활화협정(Trade Facilitation Agreement : TFA)은 WTO 설립 및 DDA 협상 개시 이후 타결된 최초의 다자무역협정으로 매우 큰 의미를 갖고 있으며, WTO로 대표되던 다자무역체제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협정 발효 1년 경과 후 WTO 회원국들의 이행 현황을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WTO, 2023). 더욱이 최근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맞물려 우리 기업들이 해외 수출국에서 겪는 통관시스템의 서비스 관련 애로사항[3] 접수가 증가하고 있는바 TFA의 효율적인 이행은 이러한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TFA는 WTO 설립 및 도하개발아젠다(Doha Development Agenda :DDA) 협상 이후 타결된 최초의 다자무역협정이라는 점과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해외 통관시스템의 서비스와 관련하여 우리 기업들이 겪는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협정 발효 1년 동안 개도국의 A/B/C 의무[4] 및 이행일 통보,

3) 관세청에 접수된 통관 애로 건수는 2014년 407건, 2015년 444건, 2016년 461건으로 증가하고 있음(김민성, 2018).

4) 개도국 및 최빈개도국이 자국의 상황에 따라 제1절(투명성 제고를 위한 수출입 관련 규제와 정보의 공표 및 시행, 수출입 관련 절차의 간소화와 수수료의 합리화, 통과의 자유 보장, 수출입업자의 관련 법규제의 준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세관 협력 등 총 12개의 조항으로 구성됨)의 조항을 발효 즉시 이행할 수

TFA 이행지원 신탁기금(Trade Facilitation Agreement Facility : TFAF)[5]의 설치 등 TFA의 이행은 WTO의 다른 분야에 비해 비교적 순조롭게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A/B/C 의무 미통보 국가나 결정하지 못한 항목이 많은 국가들의 통보를 독려하고, A의무로 통보된 조치들이 효율적으로 이행되어 통관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협정국 간에 더욱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 더불어 협정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서는 개도국 및 최빈개도국에 대한 지원이 필수적인바, 선진화된 통관시스템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2. DX를 활용한 통관절차의 간소화

TFA는 다른 조항에서 특정 기술에 대해 유사한 언급을 자제하고 있지만 회원국들은 대부분의 조항을 구현하기 위해 디지털 기술에 점점 더 의존하고 있으며, 이는 서로 다른 전자 시스템의 상호 연결에 의존하여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설명된다. 예컨대 위험관리에 관한 제7.4조의 조항은 많은 국가에서 도착 전 절차를 위해 제출된 정보, 승인된 운영자의 데이터베이스, 문서의 전자 사본 가용성 등 다른 시스템과 공유되는 디지털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동하는 전자 시스템으로 설계되었으며, 그 중 대부분은 전자통관단일창구를 통해 연결될 수 있다.

코스타리카의 전자통관단일창구 시스템 채택이 기업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는 이 제도가 실제로 무역을 촉진한 것으로 나타났다(WTO, 2018).

전자통관단일창구시스템에 따라 수출이 처리된 기업의 해외 매수인 수는 22.4% 증가했으며 각 매수인에 대한 평균 수출은 43.5% 증가했다(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2016). 세계은행(World Bank)에 따르면 통관을 위한 전자 시스템이 완전히 작동하면 경제에 상당한 이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World Bank, 2017). 세관신고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처리할 수 있으면 수입과 수출 모두에서 국경 준수에 소요되는 시간이 70%

있는 의무(A의무), 발효 후 이행까지 과도기간이 필요한 의무(B의무), 과도기간 및 지원이 필요한 의무(C의무)로 분류됨. 개도국 및 최빈개도국만을 보면 A의무를 통보한 회원국은 113개국, B의무를 통보한 회원국은 67개국, C의무를 통보한 회원국은 56개국이며, A의무 비중은 47.4%, B의무와 C의무의 비중은 각각 10.9%, 14.6%이며, 미결정이 27.1%임(김민성, 2018).

5) WTO는 개도국/최빈개도국의 무역원활화협정 이행 지원을 위해 '무역원활화협정의 이행지원 신탁기금(TFAF)'을 설치, 운영 중이다.

이상 줄어든다. 이는 간단한 기술을 활용해도 무역 마찰을 줄이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WTO, 2018).

한편 기술은 디지털 무역에 관한 규범과 규정의 범위와 복잡성을 모두 처리하는 데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AI는 기업이 규제 준수를 처리하도록 돕는 데 활용되고 있다(규제 기술은 "RegTech"라고도 함). 예컨대 AI 기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규제 변경 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및 분석하고 규정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고객에게 권장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분산원장기술(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 DLT)을 사용하면 통관단일창구를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하며 안전한 방식으로 관리할 수 있다. 이는 중복 프로세스를 제거하고, 통관 절차 및 통관을 가속화하고, 비용과 사기를 줄이고, 투명성과 감사 가능성을 강화하고, 국경 간 무역과 관련된 다양한 기관, 당국 및 이해관계자 간의 조정을 개선하여 통관 절차를 더욱 간소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Ganne, 2018).

또한 전자통관단일창구 시스템과 전자 인증서를 채택하면 규정 준수에 소요되는 시간과 자원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예컨대 디지털 기술은 제품이 GVC를 통과할 때 수출 시장에서 관련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 SPS) 표준을 충족하도록 보장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SPS 전자 인증서에 대한 예비 경험에 따르면 자동화된 인증 시스템으로 전환하면 데이터 처리 및 전송에 소요되는 시간이 줄어들어 수출이 증가하고 민간 부문 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 전자 인증은 또한 위조 인증서 발생률을 줄이고 투명성을 높여 거래 파트너 간의 신뢰와 가치 사슬 연결을 강화할 수 있다(WTO, 2018).

3. 무역원활화 및 디지털 인프라

WTO, WCO 등은 무역 관련 절차, 특히 통관 절차와 국경 간 전자상거래 물류를 간소화하고 표준화함으로써 정부가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여 사업 비용을 절감하도록 지원하는 계획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 분야의 핵심 프로그램 중 하나는 관세행정 운영을 자동화하기 위해 1980년대 초에 시작된 UNCTAD 관세 데이터 자동화 시스템(Automated System for Customs Data :

ASYCUDA)이다. 이 프로그램의 주요 목적은 자동화를 통해 재정 및 통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관세당국의 운영 역량을 강화하여 무역을 촉진하는 것이다. ASYCUDA 소프트웨어는 전 세계 90개 이상의 국가에서 통관 운송 및 통관 절차를 현대화하고 간소화하는 데 기여했다(WTO, 2018).

세계은행(World Bank)도 WTO·TFA를 구현하는 국가를 지원하는 무역활성화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World Bank, n.d.). 국제무역센터(International Trade Centre : ITC)는 또한 관민 대화를 강화하고 주요 이해관계자 간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무역활성화 개혁에 비즈니스 관점을 포함하도록 촉진하기 위해 무역활성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ITC, 2019). ITC의 개입 클러스터 중 국경 간 절차의 현대화 및 자동화는 향상된 투명성과 정보 및 문서에 대한 향상된 액세스를 통해 전자 거래자를 포함한 기업의 요구에 포괄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ITC는 또한 국경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여 중소기업이 디지털 무역거래에 대한 물리적, 절차적 장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WTO, 2018).

유엔 무역원활화 및 전자비즈니스 센터(UN/CEFACT)는 무역 관련 절차와 정보 흐름을 간소화, 표준화 및 조화시켜 국경 간 무역 및 전자 비즈니스를 촉진하기 위한 40가지 권고사항을 발표했다. 예컨대 권고 26(Recommendation 26)(The Commercial Use of Interchange Agreements for Electronic Data Interchange)은 “국제 상업 거래를 위해 전자통관단일창구를 활용하는 상업 당사자 간의 교환협정의 활용”을 권장하고 있다. 동일한 권고 사항에는 “국제 무역에서 교환 협정의 조화를 보장하고 선택적 사용을 위해 국제적으로 승인된 버전을 개발”하기 위한 전자통관단일창구의 국제 상업적 사용을 위한 모델 교환협정도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권고 사항 중 다수는 현재 국제표준화기구(ISO)의 국제 표준이다(WTO, 2018).

또한, 무역 소포화로 인해 제기된 문제로 인해 세계관세기구(WCO)는 2016년 7월 전자상거래 작업반을 설립하여 관세/세금 징수 메커니즘과 통제절차를 포함하여 저가 화물의 통관을 촉진하는 실용적인 솔루션에 대한 제안을 개발했다. 2017년 12월에 적절한 수입징수를 보장하면서 그러한 화물의 통관을 간소화하기 위한 기본 원칙을 설명하는 권고 사항이 채택되었으며, 국경간의 신속한 소포 배송을 보장하기 위해 세계적으로 조화된 접근 방식을 제공하기 위한 표준 프레임워크가 개발되고 있다.

다른 프로젝트는 특히 개발도상국의 ICT 인프라 개발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예를 들어, 세계은행의 교통 및 ICT 글로벌 관행은 정부가 인프라 대출, 기술 지원 및 자문 서비스를 통해 새롭고 혁신적인 기술을 활용하고 홍보하도록 돕는다(World Bank, 2016). 전체적으로 세계은행 프로젝트의 4분의 3 이상이 ICT 관련 구성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ITU의 통신 개발 부문 프로그램은 개발도상국의 기술 지원 제공과 통신, ICT 장비 및 네트워크의 생성, 개발 및 개선에 있어 국제 협력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ICT 인프라 프로그램의 또 다른 예이다(ITU, n.d.).

마지막으로, 다양한 지역 개발 은행뿐만 아니라 다수의 지역 조직은 무역을 촉진하고 인프라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으며, 그 중 다수는 디지털 구성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예컨대, APEC 인터넷 및 디지털 경제 로드맵은 디지털 인프라 개발, 상호운용성 촉진, 범용 광대역 액세스 달성을 핵심 초점 영역으로 식별한다. 미주개발은행(Inter American Development Bank : IADB)는 무역활성화 활동(예: 전자 단일창구 홍보 등)의 일환으로 디지털 기술 사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WTO, 2018).

4. 해외직구 물품의 통관

통관이란 관세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 수입 또는 반송하는 것을 말한다(관세법 제2조 제13호). 해외직구로 외국물품을 구매할 때도 관세법에 따라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해외직구의 경우, 특송화물로 배송받거나 우편물로 물품을 배송받을 수 있다.[6] 이는 배송 속도를 높이고 화물을 추적하는 데에 용이하다.

해외직구 물품의 통관 방식은 크게 두 가지, 세분화하면 세 가지로 나뉜다. 〈표 3〉에 통관 방식이 요약되어 있다. 크게는 목록통관과 수입신고 방식이 있다. 일반적으로는 목록통관 방법을 통해 해외직구 물품을 국내로 반입할 수 있다. 해외직구 물품을 개인사용을 위해 구매하고, 물품의 가격이 150달러 이하(미국 발송 물품은 200달러 이하[7])인 경우에 목록통관이 가능하다. 목록통관이 가능하다는 것은 물품에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해외직구 물품이 목록통관 배제 품목에 해당하면 목록통관이 불가능하다.[8] 즉,

6) 우편물은 간이 수입신고 또는 일반 수입신고를 통해 통관이 가능하다.
7) 한·미 FTA에 따라 200달러까지 목록통관이 가능하다.
8) 목록통관에서 배제되는 물품에는 의약품, 의료기기, 한약재, 야생동물 관련 제품, 농림축수산물 등 검역대

① 개인 자가사용[9] ②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③ 배제대상 제외라는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목록통관이 가능하다. 목록통관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비과세, 절차의 간결성 등의 측면에서 국내 개인 소비자에게 장점이 있다. 목록통관이 가능한 대상이면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물품이 통관된다. 목록통관을 하면 송장만으로 통관이 가능하고, 개인 특송물품의 경우에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제출하면 된다. 특송물품의 통관 절차는 아래의 〈그림 2〉과 같다.[10]

〈표 3〉 해외물품 통관 방식

구분	내용	비고
목록통관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150달러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달러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음	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이 있음
간이 수입신고	150달러 초과 2,000달러 이하인 물품은 간이 수입신고 가능	일부 품목(예: 수입제한 품목)은 간이수입신고 불가능
일반 수입신고	2,000달러를 초과하거나, 목록통관 또는 간이 수입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은 일반 수입신고를 해야 함	

자료 : 관세청 홈페이지.

〈그림 2〉 특송물품 수입 통관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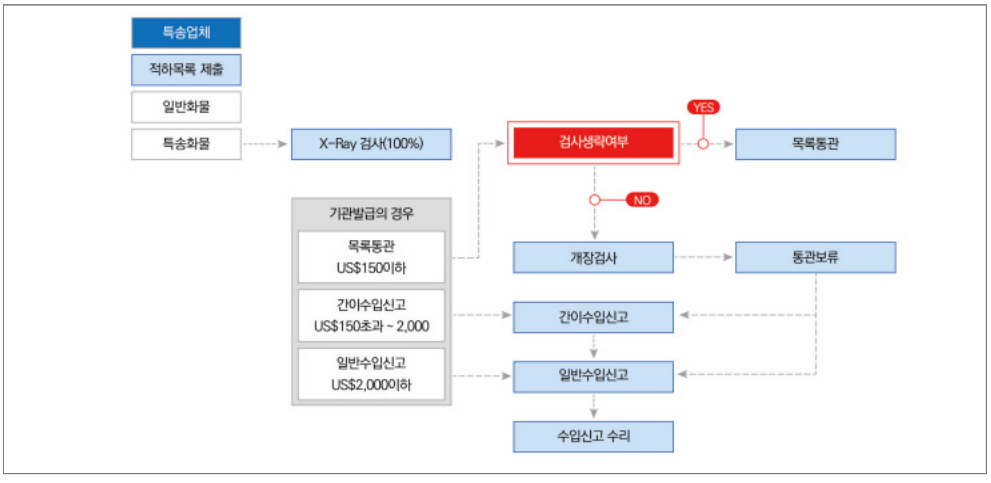

자료 : 관세청 홈페이지.

상 물품, 건강기능식품,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 물품, 식품류·주류·담배, 화장품 등이 있다(관세청, 2020).

9) 물품별로 자가사용 인정 기준이 별도로 존재한다. 자가사용 인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예: 비타민 같은 건강기능식품 총 6병) 세금이 부과된다.

10) 특송물품은 X-ray 검사를 통과해야 하는데, 검사가 생략될 수도 있다

해외 구매 물품이 목록통관에서 배제되면, 일반 수입신고를 해야 한다. 이 경우, 관세사를 통해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면 물품이 통관된다. 개인 사용을 위한 물품으로 인정되고 물품 가격이 150달러 이하인 경우(미국 발송 물품 여부 불문)에만 관세와 부과세가 면세된다. 이를 소액면세 제도라고 한다. 물품 가격이 150달러를 초과하면 관세와 부과세를 내야 한다. 물품 가격이 150달러(미국은 200달러)를 초과하고 2,000달러 이하인 물품은 간이 수입신고를 할 수 있다. 간이 수입신고를 통해 제출된 물품명, 가격 등 신고내역의 정확도에 따라 세관장은 별도 검사 없이 통관을 허용한다(엄도영, 2022). 그러나 수입제한 품목과 같은 간이신고 배제대상 품목은 간이 수입신고가 불가능하므로 일반 수입신고 절차를 따라야 한다. 일반 수입신고는 앞서 설명한 목록통관 대상이 아니거나 간이 수입신고 대상이 아닐 때 한다. 물품 가격이 2,0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일반 수입신고를 해야 한다. 물품 가격이 150달러가 넘어 관세 부과 대상이 될 때는 과세가격×관세율에 따라 관세 부과 금액이 결정된다. 관세율은 관세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예컨대, FTA 협정 관세에 따라 관세율이 다르게 결정된다.[11] 목록통관이나 소액면세 제도를 통해 면세통관 되는 물품이 과세통관 되는 물품보다 훨씬 더 많다.

2022년 전자상거래 물품의 수입통관 현황을 보면, 2022년 전자상거래물품은 목록통관 비중이 67%, EDI 수입신고(간이신고+일반수입신고) 비중이 33%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2년 전자상거래물품의 수입통관건수는 전년대비 8.8% 증가, 금액은 1.4% 증가하였다. 2022년 전자상거래물품은 수입건수 기준 건강식품이 전체의 16%를 차지하며 최근 5년간 줄곧 1위를 기록하고 있어 앞으로도 이와 같은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11) 한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보낼 때 거쳐야 하는 외국의 수입통관절차는 우리나라가 상대국과 체결한 FTA별로 상이하다. FTA별로 따라야 하는 수입통관절차(신고당사자, 신고방식, 소액면세 기준, 부가세 면세 조건, 소액면세 연간 한도, 소액면세 배제대상, 신고서식, 원산지 증명 방식, 원산지 증명서 제출 면제)는 KOTRA(2020)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4〉 전자상거래물품 수입통관현황

단위 : 천건, 천달러

	목록통관		EDI 수입신고		합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8	19,158	1,179,064	13,097	1,575,880	32,255	2,754,944
2019	25,549	1,291,953	17,439	1,851,258	42,988	3,143,211
2020	40,722	1,575,044	22,853	2,178,714	63,575	3,753,758
2021	58,553	1,975,198	29,827	2,683,159	88,380	6,458,358
2022	64,500	2,115,609	31,620	2,609,102	96,120	4,724,711

주 : EMS(전자상거래물품 포함)로 반입되는 건 중 현장면세된 건은 통계 확인 안됨
자료 : e-나라지표, "전자상거래물품 수입통관현황", 관세청,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457

또한 전자상거래 물품 수입현황을 보면, 전자상거래에 의한 수입실적 및 특송·국제우편을 통한 전체 수입 중 전자상거래 물품 수입 비중을 나타내며, 특송·우편물(A)는 특송화물 및 우편화물로 반입된 물품 중 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하여 통관한 건수를 나타내며, 전자상거래(B)는 특송화물 및 우편화물로 반입된 디지털무역거래 물품 중 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하여 통관한 건수를 나타내고 있다.

2022년 특송물품 중 전자상거래 물품 반입비중은 건수 91%, 금액 19%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송물품 중 전자상거래물품 비중은 2017년 71%에서 2022년 91%로 매년 커지고 있으며 이와 같은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5〉 전자상거래 물품 수입 현황

단위 : 천건, 백만달러, %

	특송(목록통관 및 EDI 수입통관)						우편물(EDI 수입통관)					
	특송(A)		전자상거래(B)		비율(B/A)		우편물(A)		전자상거래(B)		비율(B/A)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8	42,107	19,508	32,255	2,755	77	14	40	123	3	4	8	3
2019	52,536	19,952	42,988	3,143	82	16	37	138	3	3	8	2
2020	73,066	22,216	63,575	3,754	87	17	29	115	2	3	7	3
2021	97,902	23,654	88,380	4,658	90	20	32	90	3	5	9	6
2022	105,088	24,491	96,120	4,725	91	19	39	116	4	5	10	4

주 : EDI 수입신고물품 기준이며 100달러 이하 목록통관 특송물품 및 600달러 이하 간이통관 우편물은 제외됨
자료: e-나라지표, 전자상거래물품 수입통관현황, 관세청,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457

Ⅳ. 디지털 무역 통관체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국민안전 위해물품 차단

간편한 우편통관 절차를 악용하여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야기하는 마약류 등 불법물품 밀반입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러한 물품반입에 대한 사전정보 부족으로 우범물품 선별과 분석이 어렵다는 점이다. 관세청의 단속과정에서 건수의 전체 63%, 금액기준으로 약 24%가량이 국제우편과 특송화물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심재현, 2017). 또한 국제우편을 이용한 위법사례는 국제우편 또는 특송화물을 이용하여 일반 상용물품을 국내로 반입하면서 신고를 누락하고 관세 및 부가세 등을 탈루하는 것이다. 중국과 홍콩 등에서 가짜 명품 시계, 가방 등을 반입하여 국내 판매하는 사례와 정상적으로 거래하기 힘든 고세율 품목이나 불법물품에 대한 주요 이동통로로 국제우편을 이용하고 있다(심재현, 2017). 또한 통관전문성이 부족한 특송업체들 가운데 대부분이 자본금 3억 원 이상의 특송업체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일반 화물운송업 내지 선사 등으로 난립한 상황이라는 점이다. 이들 특송업체들이 통관 상 혜택을 누리면서 불법물품을 반입하거나 정확한 신고 등 특송업체의 의무 이행을 소홀히 하고 있어 매년 불법물품 반입이 증가하고 있다(조원길, 2022a).

따라서 국민안전이 최우선인 통관행정 정책방향을 확고히 하기 위해 통관행정 전 분야의 위험관리를 고도화하여 위해물품 적발에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이종욱, 2023).

첫째, 세관별 실정에 맞게 정보분석 전담팀을 구성·운영하여 세관별 분석테마 설정 집중 선별·검사를 실시하고 안보위해물품 차단 역량 강화를 위해 대테러 전담조직 신설, 통합항만감시시스템(Integrated Port Surveillance System : IN-POSS) 고도화로 데이터 기반 해상감시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둘째, 국민안전 위해물품 적발 중심으로 검사선별기준을 고도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전체 Central C/S(우범화물선별제도, Cargo Selectivity) 기준을 전면 정비하여 불필요한 기준을 삭제하고, 화물특성·우범정보 등을 반영하여 위해물품 선별기준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우편물사전전자 정보, 특송화물 적재화물목록, 이사화물 정보 선입수 등 화물 반입 전 선별 역량을 강화하도록 제도개편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우편물을 통한 밀수 우범국가로부터 반입되는 화물은 별도 분리검사하는 등 우범국발 화물에 대해 집중검사 실시,

여행자 통관에 있어서도 과세통관은 모바일로 자동처리하고 고위험 물품 적발에 역량을 집중하여 우범여행자와 개인화물간 정보연계분석으로 우범물품의 우회반입을 차단해야 할 것이다.

셋째, 현장에서 적극적인 검사를 통해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물품을 적발할 수 있도록 검사제도와 환경을 개선하고 과학검색장비를 추가 배치해야 할 것이다. 마약·총기류 등 위해물품 C/S 선별 건에 대한 개장·파괴검사 및 과학검색장비를 활용한 품목별 표준 검사방법을 마련하고, 컨테이너 검색기를 활용한 위험물 컨테이너 검사, 대형화물 전용 X-ray 도입, 원목·냉동어류 등 검사곤란 화물에 대한 적극적인 검사수행을 위해 단순 물품확인이 아닌 해체·절단·파괴 등 다양한 방식의 검사를 시행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이종욱, 2023).

이와 더불어 수출입물품 검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관련기관(보세구역 운영인 등)과 협력을 강화하고, 우편물품 정보와 X-ray 판독 영상을 한 화면에 동시에 구현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며, 협업검사 분야·품목을 국민안전 밀접분야 중심으로 조정하기 위한 성과평가 기준 및 조정절차를 마련하는 등 다양한 방식의 기획 협업검사를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넷째, 현장 직원들의 마약적발 등 업무성과 유인제공을 위해 활동비·포상금 등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우수직원에게는 특별승진·승급 등 인사상 혜택 부여로 현장 실무직원들의 성과창출을 독려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장 직원들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검사비용 지원·손실보상제도를 개선하고, 밀수품 은닉수법 지능화에 대비하여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첨단검사장비 배치도 확대해야 할 것이다(이종욱, 2023).

2. 통관행정 질서 확립

민관협업을 기반으로 물류공급망을 정비하여 화물 통제력을 강화하고, 변화하는 무역환경에 대응한 새로운 통관행정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이종욱, 2023).

첫째, 보세화물 관리 및 검사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법적 기능(장치)과 실무상 기능(장치+검사)이 상이한 지정장치장의 기능을 실무에 맞게 조정하고, 공개경쟁을 저해하는 재지정 절차폐지, 타 기관운영 지정장치장의 자발적 취소 신청절차 규정 및 화물관리인 관리

감독 절차 규정등 지정보세구역 제도를 개편해야 할 것이며, 보세구역 특허 취지를 훼손하는 공간 편법 분할행위 등의 차단을 위해 보세창고 운영현황 파악 및 악용사례 방지를 위해 관련 법령을 정비해야 할 것이다.

환적화물 장치 및 이동구간 세관통제 강화를 위해 Sea&Air 및 수입·환적화물 혼재 컨테이너에 대한 컨테이너 검색기 검사, 보세운송 물품에대해 도착지 검사 및 반입후 검사를 병행하여 실시하는 등 환적화물 검사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최종 적재지가 아닌 보세구역에서도 선(기)적반출을 허용하던 것을 최종 적재지에서만 가능하도록 정상화하는 등 화물이동 관리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둘째, 실화주·납세의무자 정보 및 선하증권검증을 지속 추진하고 적재화물목록 작성자 등에 대한 서류보관 의무 부여 및 LCL 화물에 대한 연대 납세의무자 확대 등 포워더 제도 정비 및 이를 시스템화하여 수입선하증권 국내발행확인 시스템 구축, 수입신고시 납세의무자 정보항목 오류통보 기능 신설, 미등록 포워더에 대한 주기적 확인단속 등 포워더의 질서교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활동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셋째, 자유무역지역법에 비해 관세법 적용이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에 유리한 경우 관세법을 우선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법령개정을 해야 할 것이다. 원료과세, 혼용승인, 반출입 및 보세운송신고, 형벌 및 과태료 등 관세법과 일관성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법령개정을 관련부처와 협의하고 자유무역지역내 관세행정 적용 법령을 명확히 하도록 세부 운영지침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반송수출담배 등 밀수입 차단하기 위해 우범화물에 대한 보세운송 도착지 검사를 확대하고 보세운송 미등록 차량을 이용에 보세운송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하여 보세운송 화물의 이동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면세점협회가 운영하는 통합물류창고와 인도장의 시스템 및 관리체계를 개선하여 국산 면세품의 국내유출 등의 불법행위를 방지해야 할 것이다.

넷째, 국가간 디지털무역 통관환경을 개선하여 국민편익을 증진하고, 전자상거래 이용 소비자 보호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전자상거래 거래정보 공유, 신고서 처리 및 대국민 One-Stop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전자상거래 물품의 신속통관과 고위험 물품의 집중관리를 위해 우범화물 선별 등 특송화물 통관관리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법규요건 미충족에 관계없이 등록대상에 포함하고 등록기한을 설정하여 세관관리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구매대행업자 등록요건을 정비하고 거래자료 입수 근거마련 및 개인통관고유번호 검증을 강화하여 명의도용 차단활동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수출입공급망의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2022년 마련한 통관심사목록 중심의 표준품명 체계를 글로벌 공급망 관리를 위해 핵심산업 원료·부품 등 경제안보 품목 중심으로 정비하도록 표준품명 체계를 수입신고 가이드라인에 추가·배포하고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에 탑재하여 범정부 공급망 관리를 지원해야 할 것이다.

통관분야 전문자격사인 관세사의 통관업 수행의 법규준수도 제고 및 공급망 관리 강화를 위해 관세법인·통관취급법인의 등록요건 충족여부를 정기 모니터링 및 직무보조자로 채용된 미등록 관세사 자격자의 통관업 수행여부, 수임제한 관세사 의무이행 여부 등의 검증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재판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밀수입사건 등에 대한 징계시효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재판·소송이 진행중인 경우 재판결과 확정일부터 1년 내 징계가 가능하도록 기재부와 협의하여 관련 법령개정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이종욱, 2023).

3. 검사환경 등 인프라 확충

디지털 무역거래 물품급증 등 업무량 증가로 인한 세관검사 형식화를 방지하고, 마약·총기류 등 위해물품의 적발율 향상 등 효과적인 검사업무 수행을 위한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첫째, 전자심사율을 제고하고 통관현장의 우범화물 선별 권한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심사실익이 적은 저위험건에 대한 전자통관 확대 및 세관자체 전자통관 운영비율 확대, 세관장확인 전자심사율 제고를 통해 감축된 업무량을 충분한 검사운영 시간에 할애하고, 세관통관정보과 현장선별 기능 강화 및 Local C/S 조정권한 확대, 검사계획 사전 보고절차 개선 등 실효성 있는 검사제도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

둘째, 통합검사장 신축 및 검사수행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 인천항 통합검사장 등 세관별 검사시설 개선사항을 적극 지원하여 안전한 환경에서 마약류 등 불법물품에 대한 집중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시설개선과 함께 검사장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관련 규정에 보세구역 창고내 검사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창고밖 검사시 검사구역 펜스

설치 등 명확한 검사기준을 명시하고 미이행에 따른 행정조치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셋째, 실효성 있는 검사업무 수행을 위해 첨단과학 검사장비를 확충해야 한다. 절단·파괴 등 적극 검사가 곤란한 화물에 대한 효율적인 대체 수단이 될 수 있는 이온스캐너, 라만분광기, 휴대용 X-ray, 내시경 카메라 등 과학 검사장비를 도입하고 전국세관 주요 통관검사장비 배치현황 및 세관별 활용율을 고려하여 장비 재배치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신축되는 통합검사장·해송특송장, 증축되는 이사화물센터, 국제우편물통관센터 등 신규 도입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인력 충원을 추진하고 전자상거래 급증에 따른 특송통관, 국제 우편물 관리 강화를 위한 통관 심사인력 등 소요정원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

4. 통관체계의 개편

법·제도측면에서 전자상거래 수입의 문제는 배송대행업체 구분이 곤란하며, 통관관리에 모순이 발생하고, 오송 및 반송물품에 대한 처리규정이 없다는 점, 전자상거래물품에 선물 및 개인용품을 혼재 배송한다는 점, 특송목록에 대한 부정확한 자료를 제출한다는 점, 등록코드 대여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관련법이 전무하다는 점이 문제점이라고 보고 있으며 특히 화주 요청에 따른 통관 편의에 대한 부분이 적다는 점을 들고 있다(곽병곤·송희영, 2009).

특히 특별통관대상업체 지정폐지와 신고제 전환으로 비교적 신뢰가 가능하다는 것과 관리 가능한 성실 업체 외에 다양한 디지털무역업체들이 모두 목록통관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더욱 조직적인 관세탈루가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목록통관대상 확대 경우 허위신고에 따른 불법통관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으며 특송물품의 목록신고 시 허위신고가 가능하며 실제 물품을 확인하지 않는 한 목록신고에 대한 진정성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이수진, 2014).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21년에는 플랫폼 중심의 전자상거래 환경을 반영하기 위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이 입법예고되었다(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2021). 개정안은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를 정보교환 매개자(SNS, 블로그, 카페 등), 연결수단 제공자(가격 비교 사이트 등), 중개자

(오픈마켓 등)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온라인 판매사업자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입점업체)와 자체인터넷 사이트 사업자로 구분하여 규정함으로써 전자상거래법 적용대상 사업자에 대한 새로운 분류체계를 확립하고 있다. 2002년에 제정된 현행법에는 법 적용대상이 통신판매업자와 통신판매중개자로 구분되어 있다(전자상거래법 제2조). 현행법상 중개자로서 플랫폼 운영사업자에게 위해물품 거래를 방지할 의무나 소비자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소비자 피해구제 및 분쟁해결에 제약이 있다. 따라서 법을 개정함으로써 위해물품의 온라인 유통을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도록 정부가 거래중단, 관련 정보 공개 등의 기술적 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소비자가 입은 피해가 플랫폼 사업자가 수행하는 역할과 관련되는 경우, 입점업체와 연대책임을 지도록 한다. 개정안은 소비자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에 전자상거래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해외 사업자에 대한 국내법 적용이 어려웠던 한계를 극복하고자 국내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피해 사례에 대해서는 국외에서의 행위에도 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해외 사업자가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엄도영, 2022).

기업 차원에서도 소비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쿠팡과 관세청은 2021년 6월에 전자상거래 통관·물류체계 효율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민관 협업을 통해 전자상거래 데이터를 관세청과 공유함으로써 해외직구 물품이 신속하게 통관될 수 있는 혜택을 부여하는 시범사업을 운영하는 등 통관체계를 개편하는 것을 주 협업 내용으로 하고 있다. 데이터 협업을 통해 신뢰도가 높은 판매자로부터 구매된 물품에 대해 세관검사를 최소화하여 소비자의 편익을 증대하고, 위험도가 높은 판매자를 통해 국내에 반입되는 위해 우려물품은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관세청, 2021a). 관세청은 네이버와 해외 상품정보 제공 업무협력 협약을 맺어 해외직구 상품정보에 관한 빅데이터를 통관절차에 활용하여 통관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안전한 물품이 유입될 수 있게 협력해야 할 것이다(관세청, 2021b). 주요 플랫폼들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자상거래 통관 효율을 개선하려는 움직임을 포착할 수 있다. 현재 디지털통관시스템으로 국가관세종합정보망(UNI-PASS)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해외직구보다 기업 간 국제거래에 적합하게 설계되어 있다. 향후 해외직구나 역직구에도 활용될 수 있는 전자상거래 통관물류정보망을 개설해야 할 것이다.

5. 해외직구 물품의 통관시스템 개선

해외직구물품은 개인인 국내거주자가 수취하는 탁송품에 해당하여 부과고지 대상물품이나, 물품가격이 150달러(미국발 물품은 200달러)을 초과하고 2,000달러 이하인 간이신고대상 특송물품은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간이신고대상물품은 물품을 수입한 화주가 신고납부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납세업무처리에 관한 고시 13조).

그러나 150달러(미국발 물품은 200달러) 이하인 물품은 목록통관 대상이지만 세관당국의 관리 목적으로 일반통관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더욱이 납세측면에서 예외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못함에 따라 부과고지대상임에도 관세법령상 납세신고를 해야 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김종덕, 김율성, 2019). 또한, 관세의 납부의무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 가격신고를 하여야 하며, 과세가격을 결정하는데 곤란하지 않다고 인정한 물품에 대해서는 가격신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개인이 자가 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해외직구물품에 대해 가격신고를 생략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가 없다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해외직구 물품의 정보를 수집하고 구매하는 단계에서는 위해식품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진다. 또한 차단목록이 구매 사이트와 연계되어 있지 않아 구매하면서 확인하기가 불편하다. 그리고 위해물품을 판매해도 해당 사이트를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위해물품의 구매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정보 부족으로 인해 소비자가 위해식품 또는 의약품을 해외직구로 구매하는 일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판매되고 있는 경우에 소비자는 믿고 구매하는 경향이 있다. 통관 단계에서도 위해물품을 차단하는 데에 애로사항이 있었다(엄도영, 2022). 특송물품 목록통관 시에는 통관목록만 제출하면 되고, 우편물도 발송인·수취인·중량·금액·품목 등의 정보만 제공하면 되기 때문에 물건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12] 통관 이후 유통관리 단계에서는 해외직구 물품의 구매검사를 정기적으로 확대하여 시행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위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으로서, 단기적으로는 부과고지 대상품목의 제외대상을 '특송물품 중 간이신고 특송물품'에서 '특송물품 중 물품가격이 150달러(미국발 물품은 200달

12) 특송물품의 경우 구매한 인터넷 주소 등의 정보가 확보되지 않았다.

러)를 초과하는 물품'으로 규정을 개정하여, 과세대상이 아닌 목록통관 배제물품으로 선정되어 일반신고를 한 물품에 대해 부과고지 대상으로 확정하고 사후세액심사 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또한 수입신고서에는 관세법 제241조 규정에 의한 물품신고 항목과 관세법 제38조에 의한 납세신고 항목이 포함되어 규정되어 있으며, 총 69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해당 항목에는 무역거래 조건과 관련하여 해외직구물품 거래와는 관련 없는 항목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디지털무역거래를 통한 국민안전 위해물품의 반입을 차단하기 용이하고, 관세법 제241조에 따라 개인이 수취하는 탁송품에는 수입신고를 생략하거나 관세청장이 정하는 간이한 방법으로 신고를 허용하고 있는 제도 취지를 고려하여 해외직구물품에 적합한 일반수입신고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일반수입신고시 제출하는 서류는 송품장 등 다양한 서류로 구성되어 있으나, 디지털무역거래를 통한 해외직구물품 구매의 경우는 관련 있는 서류에 한정(송품장과 운송장 부본)하여 제출하도록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해외직구 활성화에 따른 글로벌 기업국내유치를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국제물류창고에 판매 재고를 두고 국내소비자가 해외직구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K-브랜드 보호를 위한 통관검사 강화, 가이드북을 제작·배포 및 국민소득 수준 변화를 반영해 해외직구 면세한도 상향을 추진해 나가는 한편, 자동차·반도체용 원부자재, 차량용 요소수 등 수급불안 품목의 국내 적기 공급을 위한 24시간 통관지원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이종욱, 2023).

한편 해외 조사기관에 따르면 글로벌 전자상거래의 시장규모는 2021년 약 7,700억 달러에서 2025년 2조 달러, 2030년 6조 달러까지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2022년 8월 기준으로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건수가 2,200만 건을 넘어 국민 대다수가 해외직구 경험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김종호, 2023). 다만, 국민 편의 제고를 위해 도입한 해외직구 제도를 이용한 상업형 해외직구 등장과 지재권 침해물품의 불법 반입, 더욱이 타인의 개인통관고유번호를 도용하여 사용하는 등 해외직구를 이용한 범죄로 진화하여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단속 측면에서는 수요 집중시기에 해외직구제도를 악용한 불법수입·요건회피 행위에 대해 상시·특별단속을 실시하고, 기존 탈세 위주 단속에서 건강·안전 위해물품, 명의도용, 구매대행업체의 세금 편취 등 다양한 위법행위로 단속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계도 측면에서는

해외직구 위반행위 계도대상을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오픈마켓 등으로 확대하여 경미한 위법행위를 예방하고, 홍보 영상·디지털 포스터를 활용한 캠페인을 통해 해외직구 규정을 잘 몰라 반복되는 법률 위반사례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6. 데이터기반의 스마트통관시스템의 추진

2023년 10월 '혁신하는 관세청' 이라는 비전이 새롭게 선포되었다. 이에 새로운 비전을 구현하기 위해 심사행정 차원에서 적극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한민, 2024).

첫째, 외국 AEO 화물의 국내수입 통관절차를 간소화해야 할 것이다. 상호인정협정(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 MRA) 체결 상대국의 AEO화물이 아국 도착 시 인식방법을 자동화하여 수입자가 AEO화물임을 증빙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있으며, 해외수출자-포워더-관세사-수입자 등 물류공급망의 AEO 구성 비율이 커질수록 세관 검사·서류제출 면제의 비율을 확대하고 있다. 관세평가 관련 정보를 내·외부 이해관계자가 쉽게 접근하여 검색·활용하도록 관세법령정보포털에 관세평가 통합 DB를 구축하고 있다. 그리고 품목분류 난이도가 높은 품목을 대상으로 「품목분류 e-가이드」를 제작하고 있다.

둘째,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쉽고 편리한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은행 계좌이체를 통해 수수료 없이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통합관세납부 전용계좌(관세계좌)」를 도입하고, 소액물품에 대한 관세(200만원 이하) 납부 시 전자지급수단으로 결제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관세 납세증명서(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정부24 및 민간앱을 통해 발급되도록 개선하고, 수입부가세 납부·유예, 수출 시 자동환급 업체 지정 및 특수관계자간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Advance Customs Valuation Arrangement : ACVA)[13]의 신청·접수 등을 전산화해야 할 것이다.

셋째, 납세협력 프로그램 등 서비스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납세신고서와 고지서 서식을 개정하여 관세·내국세와 지방세를 함께 세관에 신고·납부하도록 개선하여 관세국경 단계에

13) 이 제도는 특수관계자 간에 거래되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세관 당국과 납세의무자의 상호 합의를 통해 사전에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정하는 제도이다. 관세평가제도의 전문성에 비해 이해도가 부족한 납세의무자는 과세가격을 정확하게 신고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사후 추징 및 경영안정성 등 여러 위협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특히 다국적 기업에 납세 예측가능성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징수기관인 세관에서도 안정적 세수확보와 사후심사에 따른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등, 상호 호혜적인 제도라 할 수 있다.

서의 세금신고납부 통관단일창구를 구현해야 할 것이다. 타부처의 등록·인증을 요하는 수출입물품을 AEO 기업이 통관하는 경우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ACVA 기업의 가격자료 확보 시점을 고려하여 ACVA 유효기간을 기업의 사업연도 종료시점으로 조정하고 ACVA 연례보고 검토 매뉴얼을 제작하여 심사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더욱이 관세청에서는 전자통관시스템에 입수되는 신고데이터의 정확도를 높이고자 HSK 2,400개품목에 대한 '수입신고 지침'을 작성하여 신고인에게 배포하고, 2020년 구축한 성실신고지원시스템에 탑재하여 실시간으로 예상오류를 통보해 주고 있다(이석문, 2021).

또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업무처리 자동화 및 불법복제품 판독시스템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비대면 시대에 적합한 휴대품 신고체계를 마련하는 등 스마트 통관시스템 구축을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1,800개 품목에 대한 수입신고 지침을 신규로 작성하고, 주요 핵심사항을 성실신고지원시스템에 신고내역 검증 기준으로 지속 탑재해야 할 것이며, 적하목록 오류검증 알고리즘도 업데이트하여 신고인에게 배포함으로써 정확한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이석문, 2021).

이와 함께 신고오류 비율이 낮은 신고인과 오류 통보 건에 대한 정정 비율이 높은 신고인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신고인의 자발적 신고를 유도하고, 신성장산업, 2022년 HS 개정 등에 따른 주요품목을 무역통계 분류체계에 신설해야 할 것이다.

7. 관세행정의 디지털 전환

관세법상 FOB(본선인도가격 기준) 200만 원 이하 물품에 대한 수출신고 의무가 없으며 목록통관의 경우 무역통계에도 잡히지 않아 수출실적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목록통관 수출 후 반품 수입되는 경우 디지털 무역 물품을 판매한 디지털 무역업체는 수입관세 혜택을 받기 위하여 별도의 재수입 면세신청을 위한 복잡한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것이 전자상거래 통관체제의 비효율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인 수출물품은 반품처리를 위해 다시 수입하면 수출신고필증만으로 수입통관에 무리가 없지만 목록통관으로 수출한 물품은 판매확인서, 반품사유서, 계약서, 반출서류 등 추

가서류가 요구되며, 이러한 반품처리에 따른 각종 비용과 시간 발생으로 인해 오히려 현지에서 헐값으로 거래 또는 폐기되는 실정이다(코스모닝, 2020).

민간의 DX와 공공의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등 모든 업무와 생활 전반을 디지털화하는 것이 현재의 추세이다. 40여년간 관세행정 전반에 대한 정보화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국가관세망을 운영하고 있는 관세청도 일부 현장에서는 종이서류나 수작업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따라서 관세행정 업무 단위별 DX 현황을 분석하고, 대내외의 DX 우수사례를 분석하여 관세청만의 고유한 'DX'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종이 서류나 비정형 데이터로 처리하는 업무를 전산화하고, 이미 전산화되었던 업무라도 내·외부 데이터를 연계하거나, IoT, AI 등을 통해 개선할 수 있도록 장·단기 로드맵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다(유영한, 2023).

더불어,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및 정책집행을 통한 과학적 관세행정 수행을 위해 내외부 데이터의 추가활용 분야 발굴, 데이터 분석도구별 역할 정립 및 데이터 활용·공유 체계 구축 등을 골자로 하는 관세행정 데이터 활용 확대전략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다.

관세청 빅데이터 플랫폼은 업무 분야별 빅데이터 분석 모델과 신기술 기반 데이터 분석 도구를 제공하여 관세청의 '일하는 방식'을 전환하고 데이터 기반 행정을 구현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더욱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빅데이터 분석 모델을 새로 개발하고 기존의 플랫폼도 사용자 편의성을 개선하는 등 고도화해야 할 것이다.

8. 국경간 디지털무역거래에 최적화된 통관체계 구축

관세청에서는 기존의 기업 간 거래에 맞춰진 통관제도를 분리하여 전자상거래에 최적화된 통관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장기적인 로드맵을 마련하여 단계적으로 개선과제를 추진해 오고 있다. 관세청내 전자상거래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전자상거래 특성에 맞는 업무 프로세스 설계, 제도·시스템 마련, 인프라 구축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통관관리 체계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목록과 일반수입신고로 이원화된 신고체계를 전용 수입신고서로 일원화하고, 전용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예산·업무체계·시스템구조·장비규격 등 세부계획 도출을 위한 정보화시스템마스터플랜(Information System Master Plan : ISMP)를 수행하고 있으며, 주요 공급망

을 특별통관 대상 업체로 등록·관리하고, 보세구역 반입 전 거래정보를 제출하는 경우 통관 혜택을 부여하는 근거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이석문, 2021).

특송회사·쇼핑몰을 대상으로 새로운 디지털무역거래 수출전용 시스템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다품목·소액물품·빈번거래 특성을 반영하여 반품(재수입면세) 등 통관절차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또한 그동안 제도개선이 미미했던 국제우편 통관과 관련하여 사전통관정보 제출 의무화, 우편물 사전발송정보(Pre-advice of despatch : PREDES) 등과 시스템 연계 등 국제우편 통관체계에 대한 혁신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더욱이 해외직구를 악용하여 연간 수백 회 이상 면세통관된 물품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사람들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내외부로부터 계속 되어 왔다. 이와 같이 자가소비용에 대한 면세제도의 취지를 왜곡하거나 악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별 연간 누적 면세한도를 설정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통해 관련 법령개정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이석문, 2021).

또한, 관세청에서는 해외직구 구매자에 대한관리를 강화하고자 지난 2019년부터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 의무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고, 2020년 제출 의무 규정을 마련한 바 있다. 아울러 제출되는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정확도 제고를 위해 통관목록의 수하인과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일치여부를 검증하고, 허위제출 건에 대한 제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제출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활용하여 해외직구 통관내역을 누적관리하는 등 빈번 반입자에 대한 정보분석과 사후심사도 강화해야 할 것이다.

V. 결 론

TFA는 WTO 설립 및 DDA 협상 이후 타결된 최초의 다자무역협정이라는 점과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해외 통관과 관련하여 우리 기업들이 겪는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통관 관련 제도적 기반이 취약한 국가의 경우 협정 이행 과정에서 통관 환경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필요사항을 파악 후 적절한 지원을 통해 통관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으며, TFA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든 무역원활화 조치들이 이미 제도적으로 갖추어져 있는 국가라도 구속력 있는 규정의

제정으로 이행에 대한 의무가 부과되어 통관 환경이 개선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더불어 이미 우리나라가 FTA를 통해 협정국 간에 적용되는 TFA 규정이 존재하더라도 다자채널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이행을 유도할 수 있다.

TFA는 여타 WTO 협정과는 달리 개도국 및 최빈개도국이 협정을 이행할 능력이 부족할 경우 이행능력이 충족될 때까지 이행 의무가 배제됨을 명시하고 있어 협정의 효율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적절한 지원이 필수적인바, 선진화된 통관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우리나라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GATT/WTO의 최대 수혜국으로 꼽히나 그동안 WTO 내에서의 역할은 미미하였으므로 우리나라의 선진화된 통관시스템과 기술, 컨설팅 경험을 바탕으로 TFA의 이행을 위한 지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다자체제 강화에 기여하고 국가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다. 더불어 이러한 지원을 통해 우리나라 통관시스템의 국제표준화와 국내 ICT 기업의 해외 전자정부시스템 구축 산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서도 국내와 비슷한 환경에서 고품질 통관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어 해외 통관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아울러,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일반수입·특송·우편·여행자 등 다양한 통관경로별 수출입, 환적, 감시부서 등에서 적발한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조직성과를 뒷받침하고 위험관리업무가 원활히 환류될 수 있도록 업무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관세청 적발 통계관리시스템 재설계를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국민안전 보호'라는 통관행정의 최우선 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해 나갈 수 있도록 통관현장직원들에게 적극적인 단속의지 확산을 견인할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공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개인과는 별개로,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통관정보를 특송업체 및 관세사에 제공하는 구매대행업체를 직접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일부 구매대행업체의 저가신고 등으로 해외직구소비자가 피해를 입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매대행업체 등록제 시행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 정확한 신고를 통해 법규준수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특송업체의 사업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특송업체 정보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특송업체별 해외거래처, 신고 정확도, 취급화물, 적발실적 등을 종합분석하여 위험관리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강효원. (2016). 전자상거래물품 수입통관정보 분석과 시사점. *관세학회지*, 17(3), 61-83.

곽병곤, 송희영. (2009). 전자상거래물품 통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10(3), 69-88.

곽은현. (2020). 특송물품 중 간이통관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해외직구를 중심으로. *무역보험연구*, 21(1), 183-199.

관세청. (2020). 알아두면 유익한 해외 직구 통관 길라잡이.

관세청. (2021a). 관세청-쿠팡, 전자상거래 통관체계 효율화 업무협약 체결. 관세청 보도자료.

관세청. (2021b). 관세청·네이버, 해외직구 활성화 위해 빅데이터 손잡는다. 관세청 보도자료.

김민성. (2018). WTO 무역원활화협정의 이행 현황과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종권, 유광현. (2020). 수출입통관에서의 블록체인 기술 활용 증대 가능성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21(4), 51-69.

김종덕, 김율성. (2019). 해외직구물품 급증에 따른 통관제도 개선방안 연구. *해사법연구*, 31(1), 181-206.

김종호. (2023). 조사행정운영방향. *계간관세사*, 신년호.

김충호. (2017). 특송물품 통관제도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18(1), 3-17.

김호철. (2023). 산업의 디지털 전환, 글로벌 지정학과 통상협상 新의제 검토. *통상법률*, 158, 3-57.

라공우. (2022). 아세안 주요국의 인증제도와 통관절차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23(1), 169-190.

박성순, 조광섭. (2021). Digital Transformation의 성공적 시작. 삼성SDS.

손승표. (2021). 플랫폼 기반 SCM 운영관리 효율화 방안 연구 : 관세통관 분야 Digital Trade 블록체인 기술 도입과 향후 과제. *관세학회지*, 22(4), 143-165.

송선욱. (2020). 블록체인 기술 활용을 통한 관세행정 효율화 방안. *관세학회지*, 21(2), 3-22.

심재현. (2017). 국제우편물통관제도 개선연구: 위험관리체계 재설계를 중심으로. 세종연구소.

안태건, 김태환. (2020). 디지털 컨텐츠 수입의 관세 통관에 대한 연구. *무역보험연구*, 21(2), 79-87.

엄도영. (2022). 사례로 손쉽게 이해하는 디지털 통상의 기초-국경 간 전자상거래 플랫폼: 해외직구의 통관 및 안전인증 이슈. 산업통상자원부·한국표준협회.

유영한. (2033). 정보데이터행정 운영방향. *계간관세사*, 신년호.

이명구, 이은재. (2018). 4차 산업혁명기술을 적용한 관세행정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19(1), 4.

이상진, 윤영삼. (2009). 전자통관시스템의 활용 실태분석과 서비스 제고 전략-전통적 EDI와 인터넷 EDI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관세학회지*, 10(1), 49-76.

이석문. (2021). 통관행정 운영방향. *계간관세사*, 신년호.

이수진. (2014). 해외 직접구매 수입신고 간소화 방안의 문제점 및 보완대책.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853.

이예림. (2019). 전자통관 서비스의 신뢰성과 만족도가 전자통관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20(3), 201-218.

이은재, 이지수. (2020). 4차 산업혁명 시대 무역원활화 제고를 위한 싱글윈도우 개선방안 및 시사점. *중장기통상전략연구,* 20(4), 1-140.

이종욱. (2023). 통관행정 운영방향. *계간관세사,* 신년호.

이지수. (2021). 통관단일창구에서 정보공유에 관한 연구 방향과 시사점. *관세학회지,* 22(1), 51-75.

이한영. (2020). 디지털경제·통상과 국제규범 동향. 국립외교원.

이효영, 황세희. (2021). 디지털 무역 규범 어떻게 형성되고 있나. 태재미래전략연구원.

이희흔. (2022). 디지털 FTA의 시대가 온다: 글로벌 데이터 허브가 될 것인가, 갈라파고스가 될 것인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조원길. (2022a). 디지털무역 시대 전자상거래 통관체제 개편방안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23(1), 83-104.

조원길. (2022b). 통관행정 원활화를 위한 비관세장벽 해소전략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23(4), 3-29.

최장우. (2006). B2C 전자상거래 물품의 통관관리제도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7(1), 79-106.

최장우. (2009). 전자상거래물품에 대한 특별통관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10(1), 229-253.

최준호. (2021). 통관환경변화에 따른 바람직한 관세사제도 운영 방안. *관세학회지,* 22(2), 43-60.

최철호, 송인방. (2022). 주요 전자통관시스템의 분석을 통한 UNI-PASS 수출활성화 방안. *인문사회21,* 13(4), 2539-2550.

한민. (2024). 심사행정 운영방향. *계간 관세사,* 신년호.

홍미선. (2015). 통관업무 효율화를 위한 전자통관시스템 활성화방안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KOTRA. (2020). 온라인 해외 직구·역직구 FTA 활용 tips. KOTRA 자료.

Ganne, E. (2018). Can Blockchain Revolutionize International Trade?. Geneva: World Trade Organization.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2016). The Border Labyrinth: Information Technologies and Trade in the Presence of Multiple Agencies. Washington, D.C.: IDB.

ITC(2019). Trade impact for good. Annual Report 2019.

Krotki, K. and P. Störbrock. (2020). The Impact of Digitalization on Customs Service Providers: An outlook into the future. Deloitte.

OECD, WTO and IMF. (2020). Handbook on Measuring Digital Trade (Version 1).

The World Bank. (2017). Trading Across Borders: Technology gains in trade facilitation, Washington, D.C. The World Bank Group.

UNCTAD. (2022). Digital trade: Opportunities and actions for developing countries. UNCTAD Policy Brief, No.92.

WEF. (2020). Mapping TradeTech: Trade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nsight Report.

WTO. (2018). The future of world trade: How digital technologies are transforming global commerce. World Trade Report 2018.

WTO and WEF (2022). The promise of TradeTech: Policy approaches to harness trade digitalization. WTO and WCO.

코스모닝. (2020). "역직구실적 관세환급 가능해졌다". http://www.cosmorning.com

Forbes. (2018). "Digitization, Digitalization, And Digital Transformation: Confuse Them At Your Peril". https://www.forbes.com/sites/jasonbloomberg/2018/04/29/digitization-digitalization-and-digital-transformation-confuse-them-at-your-peril/?sh=6f89f2cb2f2c.

The World Bank. (2016). "Transport and Accessibility". https://www.worldbank.org/en/topic/transport/brief/transport-and-social-responsibility

WTO. (2023). "Trade facilitation measures most commonly needing implementation assistance spotlighted".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tradfa_e/tradfa_e.htm

USTR. (2017). "Key Barriers to Digital Trade". https://ustr.gov/about-us/policy-offices/press-office/fact-sheets/2017/march/key-barriers-digital-trade

ABSTRACT

A Study on Improvement of Clearance System for Digital Trade in the Digital Transformation Era

Nak-Hyun Han

The primary purpose of the WTO is to open trade for the benefit of all, and the mission of the WCO is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of customs authorities. And both organizations provide capacity-building and technical assistance aimed at facilitating trade and customs procedures. Due to COVID-19, the global economy is going through a period of upheaval called digital transformation. In particular, with the emergence of new digital technologies, even the aspects of trade are changing, and the trade environment centered on trade in goods and services is expanding to cross-border trade in digital products, services, and data that can be supplied through the Internet. As digital trade becomes active after COVID-19, the number of e-commerce transactions involving small quantities of various products is increasing. However, despite this increase, illegal customs clearance practices such as smuggling, customs evasion, and illegal import of hazardous goods are also occurring in digital trade by abusing the customs clearance system. The purpose of this study discusses problems occurring in digital trade customs clearance and then examines ways to improve the domestic digital trade customs clearance system.

| **Keywords** Digital Transformation, Trade Facilitation, Digital Trade, Customs Clearance System